

섬유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

김 홍 수

(기술신용보증기금대구기술평가센터차장)

[목 차]

1. 벤처기업 창업절차
 - 1-1. 벤처기업 요건
 - 1-2. 벤처기업 인증 평가제도
 - 1-3. 지원제도
2. 기술평가 업무안내
3. 자금지원제도
 - 3-1. 중소·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
 - 3-2. 대학(원)생 등을 위한 벤처창업자금
 - 3-3. 협약에 의한 지원사업
4. 창업보육센터 연계지원제도

1. 벤처기업 창업절차

1-1. 벤처기업 요건

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상 벤처기업 인정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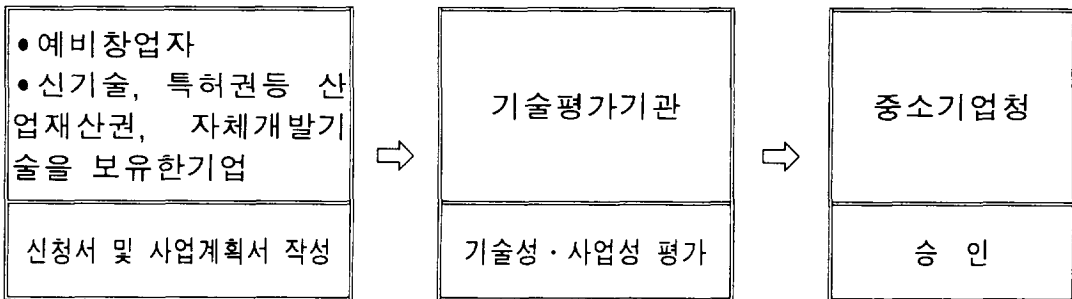
유형별	판정기준	비고
벤처 캐피탈 투자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투자회사·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투자총액이 당해기업 자본금의 20% 이상이거나, 주식인수총액이 당해기업 자본금의 10% 이상인 기업 ※ 투자총액 : 주식 및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금액 	- 벤처캐피탈회사의 투자조합의 투자 포함
연구개발비 투자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해 기업의 직전사업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5% 이상인 기업 	- 총매출액 9,600만원이상
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(특허청장이 인정하는 등록출원중인 기술포함)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% 이상이거나, 수출액이 25% 이상인 기업 - 상기 매출액(수출액)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및 의장권 (특허청장이 인정하는 등록출원중인 기술포함)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특허기술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벤처기업평가기관 • 기술신용보증기금 • 국립기술품질원 • 중소기업진흥공단 • 한국과학기술원 • 한국과학기술평가원 • 한국벤처연구소 •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• 한국산업기술평가원 •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•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
신기술 개발 사업화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기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사업관련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%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% 이상인 기업 - 상기매출액(수출액)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신기술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기술개발사업범위 •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•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•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•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• 우수신기술인증(NT)사업 • 기계류·부품·소재의 품질인증(EM)사업 •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•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•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• 소프트웨어개발사업 •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사업 •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등

1-2. 벤처기업 인증 평가제도

■ 벤처기업 평가기관

기관명	담당부서	연락처
기술신용보증기금	기술평가센터	(02)789-9244 (053)424-6970 등 전국 7개 평가센터 (www.kibo.co.kr)
중소기업진흥공단	벤처창업팀	(02)769-6653
기술표준원	기획과	(02)509-7217
한국과학기술원	창업지원실	(042)869-4785
한국과학기술평가원	기술이전팀	(02)589-2852
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	디자인경영지원팀	(02)708)2208
한국산업기술평가원	기술담보팀	(02)829-8723
한국보건산업진흥원	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	(02)722-4507
한국정보통신진흥연구원	중소기업지원팀	(042)869-1250
한국벤처연구소		(02)562-4435

■ 신청 및 심의절차



1-3. 지원제도

■ 벤처기업이 받는 혜택

-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지원
 - 정부부처 및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제도에 의한 우선지원
 - 우수기술 보유자의 벤처창업 적극 지원
 -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체제 활용, 보유기술의 시장성 제고
 - 기술개발 소요자금 지원(기술담보제도, 기술평가보증 등)

- 공장입지 확보 용이
 - 벤처기업 전용단지 설립 촉진에 따른 입지확보 용이
 - 벤처빌딩 및 벤처기업전용단지의 입지관련 특례허용
 - 벤처빌딩 건립지역 확대 및 용도 변경허가 면제
 - 기술연구소집단지화 단지의 조성확대

- 조세감면 혜택
 - 5년간 법인세, 소득세, 재산세 등의 50% 감면
 -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, 등록세 100% 면제

- 병역특례
 - 대학교수 및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
 - 석사 이상 학위자 2명 이상 보유
 - 병역특례 지정연구기관 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)

- 최저설립자본금 특혜 인정
 - 2천만원(상법상 5천만원)

- 각종 자금지원 및 투자유치

2. 기술평가

업무안내

주요업무	내용
기술가치 평가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허 및 실용신안법 등에 의해 등록(출원중)된 권리 •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지적재산권 • 기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 - 활용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술담보보증제도와 연계한 보증지원용 • 금융기관 여신 참고용 • 기업인수 합병시 당해기업 기술가치 평가용 • 기술의 매매 및 ROYALTY 산정용 등 • 엔젤투자 등 투자용
기술평가보증 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비창업자 등의 기술창업사업계획에 대한 기술성·사업성을 평가하여 보증결정하는 One-Stop Service
기술 및 사업성평가 대행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, 금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평가업무대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허기술의 기술성·사업성 평가 • 각종기금의 출연·유자사업 및 투·유자 사업의 대상자 선정 • 특정사업과 관련된 평가업무 • 코스닥 등록 신청기업 평가
벤처기업 인증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『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』상 벤처기업 판정기준 미달기업에 대한 특허기술사업화 능력 또는 신기술사업화 능력 평가 (평가결과 우수한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)
벤처기업 현물출자 관련 산업재산권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『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』에 의거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재산권(특허권 등)의 현물출자관련 평가
기술의 매매중개 알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책연구소 및 대학 등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의 사업화희망 실수요자 알선 - 기타 기술개발자 보유기술의 매매(이전, 도입) 알선
당기금 중점육성 우수기술기업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개발시범기업, 우량기술기업, 첨단기술중소기업 선정

3. 자금지원제도

■ 중소기업·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

대상자금	대출한도	금리	대출기한	창업요건	취급기관
중소·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	5억원(운전 자금3억원)	8.25%	5년	예비창업자, 창업후3년이내	기술신보 중진공
대학(원)생 등을 위한 창업자금	5억원(운전 자금3억원)		5년	예비창업자, 설립후3년이내	기술신보 중진공
기술개발자금	10억원		6년		기업은행→ 기술신보
기술개발지원자금	10억원		5년		광주, 부산, 국민은행→ 기술신보
운전자금	5억원	변동	3년		
시설투자자금	10억원		8년		
벤처창업 자금	설비구입	10억원	8년	창업후 3년	경기도→ 기술신보
	운전	2억원	3년		
	연구개발	3억원	3년		
	공장매입	7.5억원	8년		
벤처창업자금	4억원(운전1 억,시설3억)	3.0%	운전3년 시설8년	창업후 2년	인천시→ 기술신보
유망중소벤처기업	경영안정자금2 억원,구조조정 자금11억원(운 전3억원,시설8 억원)	5.5% 변동	운전3년 시설8년		대전시→ 기술신보
벤처기업육성자금	3억원(운전1억, 시설2억원)	3-5%	운전3년 시설8년	창업후 5년	대구시→ 기술신보
벤처기업육성자금	2억원(운전5천 만원,시설1.5억 원)	5% 변동	5년		경상북도→ 기술신보
벤처창업자금	3억원	5.0%	운전5년 시설8년	창업후5년	부산시→ 기술신보
벤처기업육성자금	창업자금3억원(운전1억원,시설 2억원)	3.0%	운전5년 시설8년		전라북도→ 기술신보
	성장자금2억원	5.0%	1년(1년연 장가능)		

* 일부자금은 1999년도 시행조건을 참고로 하였으므로 금년도 사업시행시 변경가능성 있음.

4. 창업보육센터 연계지원제도

기술전문인력의 창업의식 고취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기관과 연계하여 신기술 창업보육기업을 육성하는 제도

■ 업무협약을 통한 상호 연계지원 체제 구축

